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58
----------	-----

2023. 11. 27.(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11월 20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가. 제안이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2
- 규 모 : 부지 3,305㎡, 건물연면적 2,565㎡ / 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대회의실 1, 중회의실 1, 소회의실 1, 사무실 13, 노동상담실 1
- 프로그램실 1, 체력단련실 1, 휴게실 1, 다목적실 1, 창고 1, 기계실 1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 수탁기관 :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現 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의장 강국모, '14. 7. 21 ~ '23 12.31.)

○ 위탁방법 : 재계약(현 수탁자 재위탁 심사 선정)

○ 사업비 : 92,799천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문화사업
- 노동자 및 그 가족,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동자복지를 위한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가. 최근 노동자복지개선, 갈등 조정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노동자 복지지원이 중요한데 노동 관련 문제는 관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민간 분야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상호보완함으로써 다변하는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큼

- 노동자를 위한 교양·교육사업, 노동자의 고충상담, 교육 등을 위해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함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없이 원활한 사업 목표 달성을 착실히 이행하여 우수기관으로 평가된바 본 동의안 취지에 따라 재위탁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8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1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회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2
- 규 모 : 부지 3,305㎡, 건물연면적 2,565㎡ / 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대회의실 1, 중회의실 1, 소회의실 1, 사무실 13, 노동상담실 1
 - 프로그램실 1, 체력단련실 1, 휴게실 1, 다목적실 1, 창고 1, 기계실 1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 수탁기관 :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現 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의장 강국모, '14. 7. 21 ~ '23 12.31.)
- 위탁방법 : 재계약(현 수탁자 재위탁 심사 선정)
- 사 업 비 : 92,799천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문화사업
 - 노동자 및 그 가족,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동자복지를 위한 사업
-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3.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총액 : 92,799천원(민간위탁금)

· 전기요금	:	1,420천원	×	12월	=	17,040천원
· 상하수도 요금	:	54천원	×	12월	=	648천원
· 정보통신비	:	70천원	×	12월	=	840천원
· 무인경비	:	215천원	×	12월	=	2,580천원
· 전기안전대행료	:	220천원	×	12월	=	2,640천원
· 승강기안전관리비	:	120천원	×	12월	=	1,440천원
· 소방안전점검비	:	600천원	×	1회	=	600천원
· 시설물 유지관리비	:	1,332원	×	2,566m ²	=	3,418천원
· 손해보험료(공제회비)	:	1,593천원	×	1회	=	1,593천원
· 집기 렌탈비	:	126.5천원	×	12월	=	1,518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	550천원	×	12월	=	6,600천원
· 시설관리 인부임	:	2,827천원	×	13월	=	32,952천원
· 청소 인부임	:	1,610천원	×	13월	=	20,930천원

*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건물을 직접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로 상계처리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붙임)

5.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 우수 (붙임)

6. 관계법령 발체 : (붙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I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II 위탁개요

□ 시설현황

- 시설명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 위치 :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2
- 규모 : 연면적 2,565㎡(776평) / 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대회의실 1, 중회의실 1, 소회의실 1, 사무실 13, 노동상담실 1
 - 프로그램실 1, 체력단련실 1, 휴게실 1, 다목적실 1, 창고 1, 기계실 1

□ 위탁현황

- 위탁범위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전반
-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일부터 3년(예정 : '24. 1. ~ '26. 12.)
- 위탁방법 : 재계약(현 수탁자 재위탁 심사·선정)
- 사업비 : 92,799천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사무
 -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문화사업
 - 노동자 및 그 가족,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노동자복지를 위한 사업

※ 現 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의장 강국모, '14. 7. 21 ~ '23. 12. 31)

III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①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23. 10월
② 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동의(11월 회기중)	‘23. 11월
③ 기관선정	• 수탁기관 선정 - 방법 : 재계약 - 대상 : 현 수탁자	‘23. 11월
④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 6~9명 정도 - 심사 : 공신력,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등 - 선정 : 심사기준표 의해 평균 70점이상일 경우	‘23. 11월
⑤ 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23. 12월
⑥ 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24. 1월

□ 의회보고

○ 보고시기 : ‘23.11월 회기 중

○ 보고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②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노동자종합복지관 : 4회차 계약(‘14년,‘17년,‘20년,‘23년) 해당, 의회보고 대상

□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현 수탁자 재위탁 심사·선정

○ 대상기관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의장 강국모)

○ 재위탁 사유

-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 및 운영
- 지역 노사평화를 위한 상생 협력관계 유지·조정역할 양호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성실히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없이 원활한 사업 목표달성을 착실히 이행함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 “우수”

※ 위탁기간 3년 이내 재계약가능 (‘20년도 공고모집통한 계약체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23. 11월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 구성인원 : 6~9명 이내(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의안건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재위탁 심사

- 심사항목 : 사업계획 적정성,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 선정방법

- 신청법인(단체)의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70점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23. 12월

○ 내 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IV 향후계획

- | | |
|---------------------|-------------|
|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도의회) | : ‘23. 10월 |
|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 ‘23. 11월 |
| ○ 협약 체결 및 공증 | : ‘23. 12월 |
| ○ 수탁기관 사무편람 승인 | : ‘23. 12월 |
| ○ 위·수탁사무 개시 | : ‘24. 1월 ~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

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복지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노동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자격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의 체결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계약서의 사본을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운영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의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실·과·소장이 된다.

제7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평 면 도

1층 596.07㎡ 180평	
2층 596.07㎡ 180평	
3층 596.07㎡ 180평	
4층 585.99㎡ 177평	4층 평면도

▶ 지하층(191.61㎡ / 57.9평) : 전기, 기계실 ▶ 옥상(23.6㎡ / 7.1평)

붙임 3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성과 평가결과

○ 평가점수 및 등급 : 85점 [우수]

구분	평가 지표	평가 항목	배점	세부 배점	평가 점수	비고
공통 분야	사업계획의 적정성	1-1.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부합성과 구체성)	10	5	5	
		1-2. 예산편성의 적정성		5	5	
	2. 조직 및 인력관리	2-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15	5	5	
		2-2. 담당인력의 전문성		5	5	
		2-3.근무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	5	
	3. 재정 및 예산 관리	3-1.공모 및 교부절차 준수	30	5	4	
		3-2.예산집행의 효율성		10	6	
		3-3.보조금용도외사용 (해당사항 1건당-3점)		5	5	
		3-4.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회계서류증빙)		10	6	
	개별 사무	4. 사업 추진성과	4-1. 사업계획 달성도	45	10	10
4-2. 원활한 시설 관리(안전)			5		5	
4-3. 노동자 교양교육사업 추진 실적			5		3	
4-4. 노동자 고충처리 무료법률 상담 실적			5		5	
4-5. 노동자 교육회의위한 시설제공 실적			5		5	
4-6. 복지관 활성화 주민홍보			5		3	
4-7. 지도점검2 이행노력			5		5	
4-8. 지역사회 협력				5	3	
감점 사례	5-1. 임금체불,세금체납		△20	△5	0	
	5-2. 수탁사무 종사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5	0	
	5-3.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5	0	
	5-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등의 부 당징수			△5	0	

붙임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결과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건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가능성	○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노동자를 위한 교양·교육사업, 노동자의 고충상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 하다고 판단됨
③ 경제적 효율성	○ 수요대비 적절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운영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 추진으로 통해 경제적 효율성 제고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동 분야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다변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지휘·감독)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최근 노동자복지개선, 갈등조정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바 노동자 복지지원중요성 대두 ○ 노동관련 문제는 관 또는 민간에서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민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사례관리 등 상호 협력·보완을 통한 대응 필수

□ 검토결과 ➡ **적정**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등의 지원) 및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제1조(설치목적) 근거한 기관으로 노동상담실운영 및 노동자 문화교양프로그램운영, 노동자 노사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관련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연계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도 증대

⇒ **사업내용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